

교문 1 지구

건축물에 관한 결정도

- 지구단위계획구역
- 획지경계선
- 차량출입허용구간

■ 건축물 허용용도

구분	도면번호	허용용도	불허용도
단독주택 용지	A1~A35	단독주택	
공동주택 용지	B1	공동주택 중 임대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
	B2	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	
근린생활 시설용지	C1~C3	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(옥외침람이 설치된 골프연습장, 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제외)	
	C4	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(옥외침람이 설치된 골프연습장, 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제외), 노유자시설	
상업용지	E1, E2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구리시 도시계획조례」상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	
	F1	초등학교	
	F2	업무시설 중 오피스텔, 금융업소, 사무소 및 공공업무시설(배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㎡ 미만인 것)	
	F2-1	주요도 :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, 금융업소, 사무소 및 공공업무시설(배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㎡ 미만인 것), 부속도 :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 (옥외침람이 설치된 골프연습장, 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제외) ※ 주요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70%이상 확보	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
	F3	농수산물통계사무소	
	F4	우체국	
공공시설 용지	F5	도서관	
	F6	세무서	
	F7	주자장, 공공형식(주자장) 내 지상 2층과 3층 각 171.6㎡씩 총 연면적 343.2㎡	
	F8	주자장	
	F9	수도시설	
	F10	도서관	
	F11	주요도 : 종교시설, 부속도 : 노유자시설 ※ 주요도는 건축물 연면적 50%이상 확보	
	F12	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	
	F13, F14	주자장	
G		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유류소 및 그 부속용도 (가게의 세차시설을 포함) ※ 부속용도 : 위험물 저장·처리시설의 면적 1%	

※ 본도면은 변경부분에 한하여 유효함.

구분	입안권자			결정권자	
	작성자	1차확인자	2차확인자	1차확인자	2차확인자
소속	(주)필아엔씨	구리시 도시계획과	구리시 도시계획과	구리시 도시계획과	구리시 도시계획과
직위	이사	-	팀장	-	팀장
직명	사업책임기술자	지방시설주사보	지방시설주사	지방시설주사보	지방시설주사
성명	최원일	김세원	김태희	김세원	김태희
확인인					

※ 고시번호 : 구리시 고시 제2024-34호(2024. 04. 05)

Scale = 1:2,000

